

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

제정	2007. 3. 28	조례 제1505호
개정	2008. 6. 16	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일부개정	2011. 8. 9	조례 제1786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4. 8. 22	조례 제2008호
일부개정	2016. 1. 1	조례 제2149호(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	2018. 7. 31	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	2019. 12. 20	조례 제2560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명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상징물”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기, 휘장·문장, 캐릭터(마스코트), 도시브랜드, 동물, 식물, 시가 등을 말한다.

제3조(상징물의 종류)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의 기 : 별표 1
2. 시의 휘장·문장 : 별표 2
3. 시의 캐릭터 : 별표 3
4. 시의 나무(은행나무) : 별표 4
5. 시의 꽃(장미) : 별표 4
6. 시의 새(까치) : 별표 4
7. 시의 노래 : 별표 5

[전문개정 2014. 8. 22]

제4조(시의 기) ① 시 본청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의 기를 게양하여야 한다.

② 시의 기는 시 또는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.

제5조(휘장·문장) 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,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.

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.

1.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

2.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
고를 가진 자

3.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
여야 한다.

④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
있다.

1. 시장 명의의 임용장,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

2.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, 인가증, 면허증, 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
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, 시설 및 물자

제6조(상징물의 변경 등) 시장은 시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
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(상징물의 관리 등)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
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광명시 디자인 표준편람과 「광명시 이미지 형성
관리 규정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6. 16, 2014. 8. 22>

제8조(상징물의 관련사업 등)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
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

2.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

3.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

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상징물의 사용승인) ① 제3조제2호 및 제4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
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징물
사용신청서(별지 제1호, 제1-1호 서식)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
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.

1.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

2.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

3.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공공목적의 행사

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 2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상징물의 사용 승인(별지 제2호 서식)을 받은 자는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,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10조(사용료) ①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다음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1. 홍보물 제작사용 : 인쇄비용의 1% 이내의 금액

2. 판매상품 제작사용 : 판매상품 1점당 판매가격의 1% 이내의 금액

② 제1항 외에 시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기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·납부시기·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.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시가 후원하는 경우

2.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

3.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
제11조(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) ①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자문하는 광명시 상징물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31>

1.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
2.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

3. 상징물 관리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1.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

3. 시의 공무원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,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정책기획과장이 된다. <개정 2019. 12. 20>

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·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8. 6. 16, 2011. 8. 9, 2018. 7. 31>

제13조(위반 시 조치사항) 시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「상표법」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광명시시기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8. 9 조례 제1786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㉘ 까지 생략

㉙ 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”를 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㉔ 부터 ㉗ 까지 생략

부칙 <2014. 8. 22 조례 제200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1. 1 조례 제2149호,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
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19. 12. 20 조례 제2560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㉑ 부터 ㉓ 까지 생략

㉔ 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5항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㉕ 부터 ㉗ 까지 생략

[별표 1] <개정 2014. 8. 22>

시 기

기 본 형	작 도 형
	

(시기의 제작요령)

1.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:2의 비례로 한다.
2. 시기는 필요에 따라 지정된 색채와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(시기 설명)

1. 전체 설명

- 1) 하늘로 날아올라 태양을 품으려 하는 날개의 형상은 더욱 더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의 도약을 나타내며, 광명시의 행복한 생활에서 비롯되는 희망과 꿈을 품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표현
- 2) 간결한 형태의 태양은 광명시를 비추는 밝은 빛과 희망을 나타냄

2. 색상 설명

- 1) 주황색 : 광명시의 빛을 상징함
- 2) 파란색 : 광명시의 미래와 비전을 상징함
- 3) 녹색 : 깨끗한 자연환경을 상징함

[별표 2] <개정 2014. 8. 22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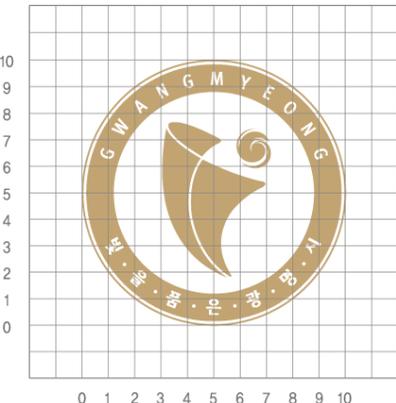
문 장

기 본 형	작 도 형
	

(제작방법)

문장의 규격은 작도형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와 용도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휘 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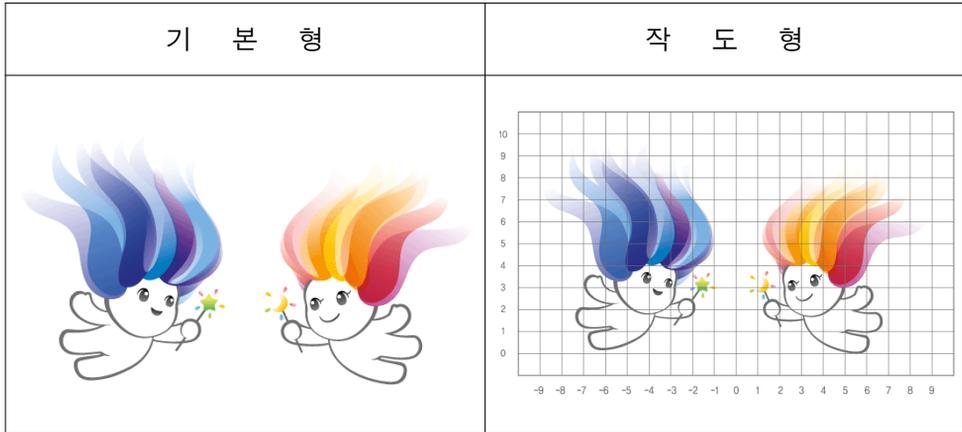
기 본 형	작 도 형
	

(제작방법)

휘장의 규격은 작도형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와 용도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[별표 3] <개정 2014. 8. 22>

캐릭터



(디자인 설명)

1. 광명시의 푸르름과 미래를 상징하는 ‘광이’와 광명시민의 행복을 의미하는 ‘명이’로, 다채로운 색의 빛의 잔상들이 모여 ‘광이’와 ‘명이’의 머리를 구성함.
2. 두 친구가 어울려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주변은 더 밝고 행복하며 조화로워짐을 상징함

(캐릭터 명칭 설명)

1. 광이 : 광명시의 첫 음절인 빛 광(光)을 사용한 명칭으로 빛나는 광명시 미래를 상징함
2. 명이 : 광명시의 둘째 음절인 밝을 명(明)을 사용한 명칭으로 광명시민의 밝은 행복을 상징함.

(제작방법)

캐릭터의 규격은 작도형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와 용도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[별표 4] <개정 2014. 8. 22>

시의 나무 - 은행나무



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곳곳하게 서 있는 은행나무는 수명이 길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잎이 곱습니다. 무성한 잎을 자랑하는 은행나무는 무궁한 번영을 의미하며 시민의 화합을 상징.

시의 꽃 - 장미



종류가 다양한 장미꽃은 무궁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. 또 따뜻하고 그윽한 향기는 우아하고 고귀한 기품을 갖습니다. 또한 줄기의 가시는 불의에 저항하는 시민의 용기를 상징.

시의 새 - 까치



까치는 야생으로 살지만 사람들이 사는 마을 가까이에 터를 잡습니다. 예로부터 까치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길조로 여겨졌으며 시민의 희망을 상징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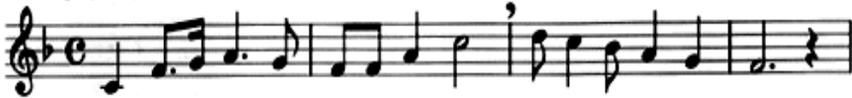
[별표 5] <개정 2014. 8. 22>

시의 노래

임 영 순 작사

한 세 용 작곡

보통빠르게



구름 - 산 - 정 기 받은 우 - 리 - 광 - 명 - 시
꿈 - - 과 - 술 기 어 린 아 립 다 운 우 리 고 - 장



언 제 - 나 - 밝 은 햇 살 큰 마 음 큰 - 뜻 되 어
찬 란 - 한 - 전 - 통 과 내 일 의 영 - 광 위 해



사 랑 과 - 지 - 혜 - 로 땀 흘 리 는 보 람 속 에
손 과 손 을 마 주 잡 - 은 역 - 군 - 이 - 되 어



오 늘 도 웃 음 꽃 피 는 자 랑 스 런 광 명 시 민

[별지 제1-1호 서식]

광명시 상징물 명세서	
사 용 할 상징물명	
도 안)	
활용안)	

[별지 제2호 서식] <개정 2016. 1. 1>

광명시 상징물 사용(변경) 승낙서			
신 청 인	①성 명 (업체명 및 대표자)		②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
	③주 소	(전화 :)	
상 징 물 (저작물)	④제품명		
	⑤종 류	⑥형태 및 수량	
⑦승낙내용	사용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
	요 건		
⑧사용료 등			
<p>「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명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광 명 시 장 (인)</p>			